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새빛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새빛학원(안산대학교)의 2013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2014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·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새빛학원(안산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새빛학원(안산대학교)의 2014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4년 4월 30일

학교법인 새빛학원

감사 

감사 